

[대학원 편(재)입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칙]

[시행일 2026.02.23.]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백석대학교 「대학원 학칙 시행규정」 제8조(편입학), 제9조(재입학), 제28조(이수학점)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편(재)입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) ① 본 대학원에 편(재)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편(재)입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관련 전공을 1개 학기 이상(6학점 이상/단, 신대원은 15학점 이상 취득) 이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.(단, 재입학 인정학기는 기존에 등록한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다.)

③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경험을 통해 6학점 이상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
④ 대학원별 특성에 따라 지원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.

제3조(제한) ① 편(재)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, 재입학은 2회까지 가능하다.

② 이수 기준 학점(6학점 이상/단, 신대원은 15학점 이상 취득)이 미달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.

③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, 재학연한 초과자, 교육과정 운영이 종료된 경우는 재입학할 수 없다. 다만, 재학연한 초과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편(재)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, 입학과 동시에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4조(전형방법) ① 편입학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,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필기시험: 전공 관련 과목, 외국어, 논술 등

2. 면접: 수학능력, 연구계획, 적성, 인성 등

3. 특별한 사정이나 대학원 형편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류전형으로 입학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.

② 재입학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하되, 필요에 따라 면접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재입학 선발의 우선순위는 이수학기 많은 순, 취득학점 많은 순, 평점평균 높은 순으로 정한다.

제5조(배점) 전형 시 배점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. 다만, 각 대학원의 형편에 따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.

① 서류심사: 100점

② 면접전형: 100점

③ 필기시험: 영역별 100점



제6조(전형횟수·시기) 편(재)입학은 1년에 2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시행 횟수 및 시기는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제7조(선발인원) ① 편입학은 해당 대학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정한다.

② 재입학은 편입학 선발인원 기준에 따라 소속 전공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.

③ 선발인원 활용은 학위과정변경, 편입학, 재입학 순으로 적용한다.

제8조(인정학기) ① 편입학의 최대 인정학기는 다음과 같다.

1. 일반/기독교전문대학원: 석사과정(2개 학기), 박사과정(3개 학기), 석박사통합과정(4개 학기)

2. 신학대학원: 석사과정(3개 학기)

3. 기타 대학원: 석사과정(2개 학기)

② 편입학 인정학기는 전적교에서 등록한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재입학 인정학기는 기존에 등록한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제적 당시의 학차로 입학할 수 있다.

제9조(인정학점) ① 편입학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② 편입학의 학기당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/전문대학원: 6학점당 1개 학기 인정

2. 특수대학원: 6학점당 1개 학기 인정(단, 신학대학원은 15학점당 1개 학기 인정)

③ 재입학은 제적 전 취득학점 전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재입학 시점에 교육과정이 개정된 경우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.

④ 제적 전 전공이 폐지되어 변경된 전공으로 재입학 한 경우, 변경 전공의 졸업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수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선수학점) ①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시 석사과정에서 관련 전공 또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학점으로, 박사과정 수업연한 내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6학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.

② 이수 방법 및 성적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기독교전문대학원 내 본인 전공과목 추가 수강

가. 1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인 9학점 이내에 포함하여 수강 가능

나. C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급(A,B,C)으로 표시됨

2. 본교 타 대학원 석사과정 내 본인 전공 관련 유사과목 추가 수강

가. 1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인 9학점을 포함하여 타 대학원 6학점 수강 가능(최대 15학점 수강)

나. C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P/NP로 표시됨

제11조(등록) ① 편(재)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(입학금 및 수업료)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② 편(재)입학 후 첫 학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다.

③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편(재)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규정) 이 세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칙 시행 규정」을 준용하며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[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세칙] 및 [대학원 재입학에 관한 세칙]은 폐지한다.② 본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재입학 한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.